

서울특별시 2021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6억 2천 2백만원
- 징수결정액 : 7억 5천 5백만원
- 실제수납액 : 7억 5천 5백만원
- 결손처분액 : 해당없음.
- 미수납액 : 해당없음.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100%(전년도 99.9%)임.

〈2021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천원, %)

예산외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결손처분액 (D)		마수납액 (E) = (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불납	시효			
합 계	622,370	754,795	754,795	-	-	-	121.3	100.0
세외수입	6,916	136,341	136,341	-	-	-	1,971.4	100.0
경상적세외수입	563	1,897	1,897	-	-	-	336.9	100.0
이자수입	563	1,897	1,897	-	-	-	336.9	100.0
기타이자수입	563	1,897	1,897	-	-	-	336.9	100.0
임시적세외수입	6,353	134,443	134,443	-	-	-	2,116.2	100.0
보조금반환수입	6,353	133,062	133,062	-	-	-	2,094.5	100.0
시·도비반환금수입	6,353	133,062	133,062	-	-	-	2,094.5	100.0
기타수입	-	1,159	1,159	-	-	-	-	100.0
그외수입	-	1,159	1,159	-	-	-	-	100.0
지ান연도수입	-	222	222	-	-	-	-	100.0
지ান연도수입	-	222	222	-	-	-	-	100.0
보조금	615,454	615,454	615,454	-	-	-	100.0	100.0
국고보조금등	615,454	615,454	615,454	-	-	-	100.0	100.0
국고보조금등	615,454	615,454	615,454	-	-	-	100.0	100.0

예산외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정수결정액 (B)	수납액 (C)	결손처분액 (D)		마수납액 (E) = (B)-(C)-(D)	예산 수납률 (C/A)	정수율 (C/B)
				불납	시효			
국고보조금	615,454	615,454	615,454	-	-	-	100.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3,000	3,000	-	-	-	-	100.0
보전수입등	-	3,000	3,000	-	-	-	-	100.0
전년도이월금	-	3,000	3,000	-	-	-	-	10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	3,000	3,000	-	-	-	-	100.0

2. 세출결산

- 예산액 : 30억 9천만원
- 예산증감 : △ 1천 1백만원
- 예산현액 : 30억 7천 9백만원
- 지출액 : 27억 6천만원
- 국고보조금 반납금 : 3백만원
- 불용액 : 3억 1천 5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0.4%(전년도 5.5%)가 발생
 - 불용사유별 금액으로는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7,000천원, 지출잔액 308,707천원임.

< 2021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예산외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보조금 반납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 (E=D/A)
총 예산	3,079,045	2,760,337	3,000	315,708	10.4
사업예산계	2,928,253	2,654,114		271,139	9.4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					
- 을지태극연습 준비 및 실시	102,350	89,559		12,791	12.5
- 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설 유지관리	227,074	214,452		12,622	5.6
-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6,805	2,946		3,859	56.7
-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70,240	36,173		34,067	48.5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보조금 반납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 (E=D/A)
강화	예 비 군 육 성 · 지 원	350,000	350,000		0	0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3,000	2,947		54	1.8
	시 민 안 보 의 식 합 양	60,000	13,556		46,444	77.4
	사 회 복 무 요 원 관 리	592,649	466,351		126,298	21.3
	민 방 위 교 육 운 영 비	610,195	600,195	3,000	7,000	1.6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30,875	30,875		0	0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50,843	38,925		11,918	23.4
	민 방 위 교 육 장 운 영	135,509	119,423		16,086	11.9
	민 방 위 장 비 보 급 · 확 충	14,130	14,130		0	0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674,583	674,583		0	0
일반예산계		150,792	106,223		44,569	29.6
기 본 경 비		147,716	103,147		44,569	30.2
재 무 활 동		3,076	3,076		0	0

가. 예산 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 전용 : 해당사항 없음.

다. 예산 이체 : 해당사항 없음.

라. 예산 변경 : 해당사항 없음.

마. 예비비 사용 : 해당사항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사. 국고보조금 집행

○ 2021회계연도 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민방위교육운영비’ 등 3개 사업에 6억 1천 5백만원을 수령하여 6억 1천 2백만원을 집행하고 3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3. 기금 결산 : 해당 사항 없음.

4. 채권현재액 : 해당 사항 없음.

5. 채무 결산 : 해당 사항 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21년도말 비상기획관 관리 공유재산

- 건물 2,517.35 m^2 4억 5천 6백,
- 기타 2건 3천 5백,
- 총 4억 9천 1백만원 상당의 금액임.

< 2021회계연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단위:천원)

구 분	2020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21년도말 보유현황	
	수	가격	증가	감소	수	가격
합 계	3	491,079			3	491,079
행정 재산	계	3	491,079		3	491,079
	공용재산	3	491,079		3	491,079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재산					
일반재산						

II. 검토의견

1. 세입결산

○ 2021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6억 2천 2백만원) 대비 121.3% 수납된 7억 5천 5백만원으로 전년(6억 2백만원) 대비 25.4%(1억 5천 3백만원) 증가한 수준임.

※ 징수결정액(7억 5천 5백만원) 대비 징수율은 100%(전년도 99.9%)임.

〈2021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2021년		예산대비		2020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A)	결산액(B)	금액(B-A)	비율(B/A)		금액(B-C)	비율(B/C)
합 계	622,370	754,795	132,425	121.3	602,030	152,765	125.4
세 외 수 입	6,916	136,341	129,425	1,971.4	6,640	129,701	2,053.3
경상적세외수입	563	1,897	1,334	336.9	361	1,536	524.0
임시적세외수입	6,353	134,443	128,090	2,116.2	6,278	128,165	2,141.5
보 조 금	615,454	615,454	0	100.0	590,064	25,390	104.3
보 전 수 입 등 내 부 거 래	0	3,000	3,000	순증	5,326	△2,326	△56.3

가. 세입추계의 정확도 제고 필요

○ 최근 3년간 비상기획관 세입 결산 추이를 보면, 예산현액*은 지속 감소하여 2021년도의 경우 전년대비 1.4%(9,097천원) 감소하였고, 징수 결정액**은 전년대비 25.3%(152,543천원) 증가하였음.

* 2019년 7.8억원 / 2020년 6.3억원 / 2021년 6.2억원

** 2019년 7.8억원 / 2020년 6억원 / 2021년 7.5억원

- 초과세입의 발생은 면밀하지 못한 세입추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산현액의 대비 초과세입 비율이 121.3%(132,425천원)에 달하는 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시민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비효율적 재정운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상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반하는 재정 운영 행태인바,

- 비상기획관은 세입예산 편성 주요 지표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최근 3년간 예산액 대비 수납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예산액	수납액	(%)	예산액	수납액	(%)	예산액	수납액	(%)
합계	622,370	754,795	121.3	631,467	602,030	95.3	784,048	777,066	99.1
공유재산임대료	-	-	-	4,540	-	0	6,066	6,066	100.0
기타이자수입	563	1,897	336.9	499	362	72.5	472	457	96.8
시·도비반환금수입	6353	133,062	2,094.5	13,264	4,758	35.9	17,332	10,365	59.8
그외수입	0	1,159	순증	-	1,520	순증	-	-	-
지난연도수입	0	222	순증	-	-	-	-	-	-
국고보조금	615,454	615,454	100.0	613,164	590,064	96.2	760,178	760,178	10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0	3,000	순증	-	5,326	-	-	-	-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	징수결정액	수납액	(%)	징수결정액	수납액	(%)
합계	754,795	754,795	100.0	602,252	602,030	99.9	777,066	777,066	100.0
공유재산임대료	-	-	-	-	-	-	6,066	6,066	100.0
기타이자수입	1,897	1,897	100.0	365	362	99.2	457	457	100.0
시·도비반환금수입	133,062	133,062	100.0	4,977	4,758	95.6	10,365	10,365	100.0
그외수입	1,159	1,159	100.0	1,520	1,520	100.0	-	-	-
지난연도수입	222	222	100.0	-	-	-	-	-	-
국고보조금	615,454	615,454	100.0	590,064	590,064	100.0	760,178	760,178	10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3,000	3,000	100.0	5,326	5,326	100.0	-	-	-

나. 세입예산 미편성

- 2021회계연도 결산서 상 비상기획관 세입 내역 중 ‘그외수입(1,159천원)’과 ‘지난연도수입(223천원)’ 및 ‘국고보조금사용잔액(3,000천원)’에서 세입예산 편성 없이 ‘전년도이월금’으로 징수결정되어 전액(4,382천원) 수납되었음.

< 예산액 없는 징수결정·수납 현황 > (단위: 원)

예산과목	회계연도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과부족액
세외수입	2021	-	1,381,510	1,381,510	-
임시적세외수입		-	1,159,000	1,159,000	-
기타수입		-	1,159,000	1,159,000	-
그외수입		-	1,159,000	1,159,000	-
지난연도수입		-	222,510	222,510	-
지난연도수입		-	222,510	222,510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3,000,000	3,000,000	-
보전수입등		-	3,000,000	3,000,000	-
전년도이월금		-	3,000,000	3,000,000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	3,000,000	3,000,000	-

-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징수되는 예산운영 행태에 대해, 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소액이더라도 기준에 맞는 세입편성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계획성 있는 예산운영을 위한 비상기획관의 관심과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예산편성 일반지침¹⁾에서는 부서별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입의 세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 없이 세입 예산에 편성토록 규정하였음.

1) 202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33쪽)

각 부서별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 없이 세입예산 편성 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비반환금 수입, 공급통장 이자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제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4 기타수입		
	224-07 그외수입	1.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2. 기타 특별회계의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수입 3. 지방자치단체 금고 출연 등 협력사업비 4. 지역상생발전기금(재정지원계정)지원금
225 지난연도수입		
	225-01 지난연도 수입	1.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 제외수입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0 보전수입 등		
712 전년도 이월금		
	712-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에 반납 예정인 금액 ※ 시·군·구에서 반납하는 금액은 시·도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
	712-02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 시·군·구에서 전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시·도에 반납할 금액
	712-03 전년도 이월사업비	1.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중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 이월금으로서 결산시 현액으로만 관리하는 금액 (예산편성시에는 불필요)

다. 시·도비반환금수입 처리 부적정

- 비상기획관 세입결산 중 ‘시도비반환금수입’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및 ‘민방위 장비 보급·확충’ 사업 등 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전년도(2020회계연도)에 자치구에 교부한 시비보조금의 정산에 따른 반환금(이자 포함)을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예산과목으로, 예산현액(6,353천원) 대비 2,094.5% 수납(133,062천원)되어 과도한 초과세입(126,709천원)이 발생하였음.

-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은 매년 예산액과 결산액의 불일치가 지속적으로 크게 발생하고 있는바, 보조금 교부 후 보조사업별 진행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적기에 교부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사용잔액을 세입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최근5년간 시·도비반환금 수입 예산/수납률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예산액	6,353	13,264	17,332	18,350	10,369
결산액	133,062	4,758	10,365	16,408	19,706
수납률(%)	2,094.5	35.9	59.8	89.4	190.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관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200		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3		보조금 반환수입	
223-01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1.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보조금 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
223-02		자체보조금반환수입	1. 시·도,시·군·구에서 전년도에 보조한 보조금의 집행잔액 중에서 반납하여야할 금액을 제외한 반환수입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	징수결정액	수납액	(%)	징수결정액	수납액	(%)
시·도비반환금수입	133,062	133,062	100.0	4,977	4,758	95.6	10,365	10,365	100.0

- 또한, '시도비반환금수입'은 자치구 등에서 시비보조사업(2019년) 종료 후 보조금 사용잔액을 다음연도 세출예산에 편성(2020년)하여 서울시에 반환하여 서울시 세입으로 계상되어야 함에도,

- 특정 자치구에서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사업연도(2019년)의 다음연도에 반환하지 않고 2년 후(2021년)에 반환함으로써 비상기획관에서는 세입 결손(2020년)이 발생하여 2021년에는 세입예산 없는 ‘지난연도수입’(222천원, 이자 포함)으로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보조금예산 운영 행태가 나타났음.
- 따라서, 보조금 사용잔액이 적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자치구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관련 교육 수행 등 비상기획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2021회계연도 시도비반환금 지연 세입(지난연도수입) 내역>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사업기관(자치구)	집행연도	교부액	징수결정액*(A)	세입년도	반환액(B) -세입액-	차액(A-B)	비고 (차액발생/지연세입 사유 등)
민방위 교육운영비	성동구청	2019	17,336	219	2021	219	-	성동구청 예산부족으로 2021.1월에 납부

<최근 3년간 보조예산 집행 및 반납 연도별 현황>

(단위 : 원)

집행연도	시비집행잔액(A) -징수결정액-	반납연도	시비반납액(B) -수납액-	차액(B-A)	반환 증감률(%)
2018	10,365,610	2019	10,365,610	△0	0.0
2019	4,977,360	2020	4,758,360	△219,000*	△4.4
2020	133,062,030	2021	133,062,030	0	0.0

* 2021회계연도 지난연도수입으로 222천원(이자포함) 징수되었음.

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세입 미편성

-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사용잔액으로 국고에 반납 예정인 금액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당초 세입예산 편성 없이 ‘전년도이월금’으로 징수결정되어 수납(300만원) 되었음.

< 비상기획관 국고보조금사용잔액 결산 > (단위: 원)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과부족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3,000,000	3,000,000	-
	보전수입등	-	3,000,000	3,000,000	-
	전년도이월금	-	3,000,000	3,000,000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	3,000,000	3,000,000	-

- 국고보조금의 경우 전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액을 전망하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보전수입등내부거래-보전수입 등-전년도 이월금)’으로 세입 예산에 편성하고,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0 보전수입 등		
712 전년도 이월금		
	712-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에 반납 예정인 금액 ※ 시·군·구에서 반납하는 금액은 시·도에서 세입 세출외현금으로 처리
	712-02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 시·군·구에서 전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시·도에 반납할 금액
	712-03 전년도 이월사업비	1.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중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 이월금으로서 결산시 현액으로만 관리하는 금액 (예산편성시에는 불필요)

- ‘국고보조금 반환금(예비비및기타-반환금기타)’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양입 제출(量入制出) 원리에 기초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7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800 예비비및기타			
	802 반환금기타	01. 국고보조금 반환금	
		1.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시·도에서 국고보조 시·군·구 반환금을 세입조치할 과목이 없으므로 시·군·구 반환금은 시·도의 세입세출외 현금에 예치후 시·도에서 반납 조치 2.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 중앙부처가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되, 예산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세입예산 편성없이 세입을 발생시켰는바, 관련 규정 숙지를 통한 예산 편성 및 결산을 위한 비상기획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세출결산

- 2021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출예산 결산액은 예산현액(30억 7천 9백만원) 대비 89.6%(27억 6백만원)를 집행하여, 불용률은 10.3%(3억 1천 6백만원)로, 전년(5.5%) 대비 4.8% 증가한 수준임.

〈 2021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보조금 반납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 (E=D/A)
총 예 산		3,079,045	2,760,337	3,000	315,708	10.3
사 업 예 산 계		2,928,253	2,654,114		271,139	9.4
비상대비 및 민방위	을지태극연습 준비 및 실시	102,350	89,559		12,791	12.5
	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설 유지관리	227,074	214,452		12,622	5.6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보조금 반납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 (E=D/A)
대응능력 강화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6,805	2,946		3,859	56.7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70,240	36,173		34,067	48.5
	예비군 육성·지원	350,000	350,000		0	0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3,000	2,947		54	1.8
	시민안보의식 함양	60,000	13,556		46,444	77.4
	사회복무요원 관리	592,649	466,351		126,298	21.3
	민방위교육운영비	610,195	600,195	3,000	7,000	1.1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30,875	30,875		0	0
	민방위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50,843	38,925		11,918	23.4
	민방위교육장 운영	135,509	119,423		16,086	11.9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14,130	14,130		0	0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674,583	674,583		0	0
일반예산계	150,792	106,223		44,569	29.6	
기본경비	147,716	103,147		44,569	30.2	
재무활동	3,076	3,076		0	0	

※ 국고보조금 반납액(3,000천원)은 집행잔액에서 제외.

가. 예산의 사고이월 후 집행잔액 발생

○ 비상기획관은 2020회계연도에 “서울안전통합센터 총무시설 유지관리” 사업에서 총무기밀실 외부기관 영상회의 활용장비 구축을 위한 계약 체결이 지체되어 시설비(1억 5천 5백만원)를 사고이월한 바 있음.

※ 당초 사고이월 요구액 1억 5천 8백만원에서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의뢰액 155,249,600원으로 조정(민방위담당관-1797, 2021.2.5.)되었음.

- 이에 따른 본 사업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시설비 1억 5천 9백만원) 대비 96.1%(1억 5천 2백만원)을 집행하여 3.9%(6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통계목	2021 예산액	예산 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집행률 (나)/(가)	집행잔액	
		본예산	사고이월액				금액	비율
서울안전 통합센터 충무시설 유지관리	소계	71,824	155,250	227,074	214,452	99.4	12,622	5.6
	사무 관리비	4,200	0	4,200	4,200	100.0	0	0.0
	공공운영비	63,624	0	63,624	57,256	90.0	6,368	10.0
	시설비	4,000	155,250	159,250	152,996	96.1	6,254	3.9

※ 집행잔액 사유 : 충무기밀실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지출원인 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써,
- 사고이월은 단지 해당연도 편성예산의 미집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서비스의 적절한 공급시기 지연을 초래하고, 그 지연의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 이렇듯, 예산운영 원칙의 예외적 형태인 사고이월을 수행하고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예산운영이라고 할 것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비상기획관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집행잔액 발생

- 비상기획관의 2021회계연도 사업 중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하여 예산을 조정한 6개 사업(8개 통계목)에 대하여 예산현액(3억 2천 3백만원) 대비 33.6%(1억 9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2021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집행잔액 발생 현황> (단위 : 천원, %)

사업명 통계목	당초 예산액	1차 추경	2차 추경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불용사유
합계	489,092	-11,924	-154,500	322,668	108,568	33.6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80,240		-10,000	70,240	34,067	48.5%	코로나19로 인한 통합방위회의(참여인원300여명, 2회) 미실시 안보지문회의(8회→4회) 축소 집행잔액
국외업무여비	10,000		-10,000	-	-	0.0%	국외출장여비 취소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18,000	-15,000		3,000	53	1.8%	코로나19로 인한 예비군의날 기념행사 준비중 취소로 준비비용만 실비 정산
행사운영비	15,000	-15,000		-	-	0.0%	서울수복기념행사 취소
시민 안보의식 함양	140,000		-80,000	60,000	46,444	77.4%	코로나19로 인한 전후세대 전적지견학(4천만원) 미실시 6.25전쟁기념행사(550명→99명) 및 나라사랑 안보포럼(250명→80명) 축소
민간행사사업보조	80,000		-80,000	-	-	0.0%	여군창설기념행사 취소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91,343		-40,500	50,843	11,918	23.4%	코로나19로 인한 민방위 온라인교육 실시(강사료 등 미집행잔액)
사무관리비	30,860		-13,100	17,760	11,314	63.7%	민방위강사 및 직원연수 취소
행사실비지원금	2,400		-2,400	-	-	0.0%	민방위창설기념행사 취소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000		-25,000	-	-	0.0%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 취소
민방위교육장 운영	159,509		-24,000	135,509	16,086	11.9%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체험교육 미실시(강사료 등 미집행)
사무관리비	47,100		-24,000	23,100	6,893	29.8%	시민체험교육 강사료 미집행 등
국고보조금 반환	-	3,076		3,076	0	0.0%	
국고보조반환금	-	3,076		3,076	0	0.0%	(집행잔액 460원)

○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음.

-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자원 마련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감액 편성하고도 과도한 집행잔액을 발생시키는 것은 긴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예산조정 취지에 반함은 물론,
- 서울시민을 위해 긴급히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비상기획관의 책임있는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다. 20% 이상 불용 또는 1억원 이상 불용

○ 비상기획관은 세출예산 결산 결과 3억 1천 6백만원(예산현액 30억 7천 9백만원 대비 10.3%)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20%이상 또는 1억원 이상 불용 사업 >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현액(A)	지출액(B)	집행잔액(D=A-B-C)	불용률(%) (E=D/A)
총 예 산	3,079,045	2,760,337	315,708	10.3
사 업 예 산 계	2,928,253	2,654,114	271,139	9.4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50,843	38,925	11,917	23.4
사회복무요원 관리	592,649	466,350	126,298	21.3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6,805	2,9464	3,858	56.7
시민안보의식 함양	60,000	13,556	46,443	77.4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70,240	36,172	34,067	48.5
일 반 예 산 계	150,792	106,223	44,569	29.6
기 본 경 비	147,716	103,147	44,268	30.2

< 20%이상 또는 1억원 이상 불용 사업(통계목별)>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	불용사유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사무관리비	6,805	2,946	3,858	56.7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동원실제훈련 미실시 (중점자원관리확인일 시범식 교육 실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사무관리비	56,790	22,970	33,819	59.6	코로나19로 인한 통합방위회의 (참여인원300여명, 2회) 미실시 안보지문회의(8회→4회) 축소 집행잔액
시민 안보의식 함양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	13,556	46,443	77.4	코로나19로 인한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4천만원) 미실시 6.25전쟁기념행사(550명→99명) 및 나라사랑 안보포럼(250명→80명) 축소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무관리비	5,760	3,527	2,233	38.8	사회복무요원 행정지원 수요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민방위교육운영비	사무관리비	10,000	0	10,000	100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전액 불용(국고보조금 3백만원) (지역민방위대 권역별 경진대회)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사무관리비	17,760	6,446	11,313	63.7	코로나19로 인한 민방위 온라인 교육 실시(강사료 등 집행잔액)
민방위교육장 운영	사무관리비	23,100	16,207	6,892	29.8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체험교육 미실시(강사료 등 집행잔액)
기본경비	국내여비	40,320	16,155	24,164	59.9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국내여비 출장 자제 집행잔액

- 비상기획관의 2021년도 세출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 총 16개 사업(행정 운영 경비, 재무활동 포함) 중 1억원 이상 또는 20% 이상의 집행잔액을 발생 시킨 6개의 사업의 집행잔액은 비상기획관 총 집행잔액(3억 1천 6백만원) 발생액의 84.5%(2억 6천 7백만원)를 차지하고 있고,
 - 이 중 1억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은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5억 9천 3백만원) 대비 21.3%(1억 2천 7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여 총 집행잔액(3억 1천 6백만원)의 40.0%를 차지하고 있음.
 - 비상기획관은 사회복지요원 행정지원 수요가 감소하여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수요조사 없이 전례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은 재정투입이 시급한 필요 사업에 적기 재원을 투입 할 수 없게 하는 행위로써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예산운영 행태라고 할 것임.
 - 한편, 통계목별 100%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은 “민방위교육운영비” 사업의 ‘사무관리비(1천만원)’로 ‘지역민방위대 권역별 경진대회’ 행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취소되어 발생한 것으로,
 - 이러한 행사성 경비는 2021년 2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감액편성 우선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한 비상기획관의 관심과 개선의 노력이 요망 된다고 하겠음.

라.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사업 관리·감독 철저 필요

- 비상기획관은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²⁾」 및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³⁾」)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전적지 견학 및 안보교육 등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6천만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8천만원)’ 하고 있으나,
 -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추가경정예산 감액편성(△57.1%, 8천만원)을 하고도 예산현액(6천만원) 대비 22.6%(1천 356만원) 지출하는데 그쳐, 77.4%(4천 644만원)의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통계목	2020 예산액			예산현액	불용액	
		본예산	추가경정			집행잔액	불용률
			1회추경	2회추경			
시민	소계	140,000		-80,000	60,000	46,444	77.4
안보의식 함양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	-	-	60,000	46,444	77.4
	민간행사사업보조	80,000	-	-80,000	-	-	-

-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후세대 전적지견학’(4천만원) 미실시와 ‘6.25전쟁 기념행사’ 축소(550명 → 99명), ‘나라사랑 안보포럼’ 축소(250명 → 80명)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2)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제5조 (예산의 지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다만, 본 사업의 실적을 살펴보면 주로 행사성 또는 집회성 사업으로 비록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사업을 축소 운영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추가경정 예산 감액 편성의 우선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국가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조정에 참여하는 비상기획관의 전향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마.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 위배 (사무관리비 산출기초별)

- 비상기획관 사업별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산출기초별 집행 현황을 보면,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중 ‘기본사무용종이류’에 편성된 예산액(746천원) 대비 494.6%(3,690천원)를 집행하여, 편성된 예산보다 초과집행하였고,
 - ‘행정장비수리비(토너 등)는 예산액(2,250천원) 대비 159.6%(3,690천원)를, ‘인쇄비 및 유인물제작’은 예산액(1,423만원) 대비 106.6%(15,166천원)를 집행하는 등,
 - 기본경비 산출기초별 편성된 예산을 초과 지출하여,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배한 예산 집행 행태가 매년 지속되고 있음.

< 사무관리비 산출기초별 한도 초과 지출 내역 > (단위 : 천원, %)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계	17,226	22,447	△4,951	130.3
기본사무용종이류	746	3,690	△2,944	494.6
행정장비수리비(토너 등)	2,250	3,591	△1,071	159.6
인쇄비 및 유인물 제작	14,230	15,166	△936	106.6

- ‘사무관리비’가 비교적 탄력적으로 사용가능한 예산이라고는 하나, 편성된 예산 보다 과다 집행되는 회계질서 문란 행태가 매년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는바,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집행을 통해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비상기획관의 관심과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수석전문위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최석훈
--------	-------	-------	-----